

# 불법 유동광고물 식별 및 신고방법

## I 유동광고물 표시방법 및 불법사례

### 1 현수막

- (표시방법) 현수막 지정게시대, 허가·신고된 지주 및 벽면을 이용한 게시시설(대규모점포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), 공사현장 가림막에 표시



지정게시대에 부착



허가·신고된 게시시설에 부착

### ○ 불법사례

- 가로수, 전주·가로등주, 교량, 가로시설물 등 적법한 게시시설에 설치하지 않은 설치된 현수막



- 건물 벽면의 적법한 게시시설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



## 2 전 단

- (표시방법)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를 거쳐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
- 불법사례
  - 신고 되지 않은 전단



- 음란·퇴폐성 내용의 전단



### 3 입간판

- (표시방법) 높이 1.2미터, 1면의 면적 0.6제곱미터 이하로 하여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설치

※ 전기·조명 보조장치 사용금지, 자사광고만 허용, 영업·근무시간 종료 시 사업장·건물 안으로 이동

#### ○ 불법사례

-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밖에 있는 입간판



- 전기 혹은 조명을 사용한 입간판



## 4 벽보

- (표시방법)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부착 가능



- 불법사례

- 지정벽보판(게시판) 외에 부착된 벽보



## II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방법

### ① 앱 스토어(App Store)에서 “생활불편신고” 설치

### ② “생활불편신고 앱(App)” 접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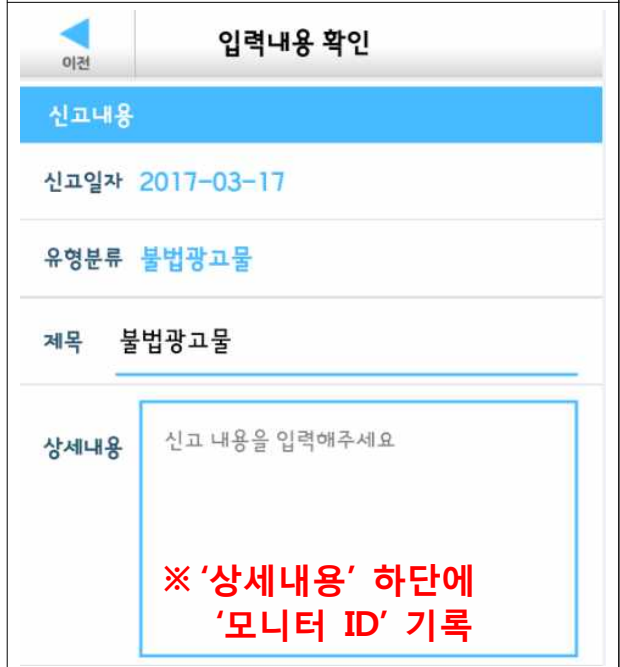
### ③ 불법광고물 클릭



### ④ 불법광고물 사진 혹은 동영상 첨부



### ⑤ 내용입력 및 위치정보 전송 (신고하는 위치 자동 등록)



### ⑥ 불법광고물 조치결과 확인

- ▶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조치후 SMS(단문자) 발송
- ▶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에서 처리내용 확인 가능